

과징금·과태료 부과 사항

1. 조치 대상 법인명	에스비아이저축은행
2. 과징금 등의 종류	과징금
3. 과징금 등의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429조
4. 과징금 등의 원인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5. 과징금 등의 내용	과징금 100,000원
6. 기타	결정 통보일 : 2019.05.17.